

기안용지

분류기호 문서번호	도계 4-319 (전화번호 75-6193)	전 권 규 정 조 항	
처리기간	시 상		
시행일자	3.7		
보존년한	3.7		
보조기관	제2부시장	합	법무국장법무심사관 (2차인선사)
	도시정비국장		
	도시계획과장		
기안책임자	김창선	77. 2. 18 신홍섭	조
경유수찰	각안참조	발신	통계
제 목	도시계획 재개발지구 일부변경		검열 1977. 3. 10 도시부국장
	제 1안 내부결재		고사제 5호
<p>1. 당시 도시계획 재개발지구 (청계천 7가 제9안)에 대하여 기하 전기공급설비 지역으로 시설결정된 지역은 재개발 지구에서 제외하고 인접 과유지를 추가 지정코자 하며</p> <p>2. 제 4, 5, 지구는 지구계를 일부조정하여 건축물의 배치 및 토지이용 계획을 원활히 하고자 당시 도시계획 위원회 제2차(77. 2. 15)에서 심의 통과 되었기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제13조와 건설부고시 제 174호(76. 11. 2)의 권한 위임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 하고 별안과 같이 시행코자 하오니 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아 래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. 재개발지구. 변경지적승인. 조서. .</p>			

구분	지구명	위치	면적(㎡)			비고
			기정	변경	변경후	
청계천가	제4지구	중구 신양동 27-34	850	감 109	741	
가	제5지구	" 27-73	709	감 109	818	
	제9지구	" 27-5	590	감 206 증 150	534 444	

첨부: 도시계획 심 회의록 1부
도면 1부

고시안심사	1977.2.26	김호
심사자	합재계장	합재계장
승인	진권	

제 2 안 고시안

서울특별시 고시 제 호 결정

도시계획 재개발지구 일부 변경 지적승인
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재개발 지구

제1조 및 제13조와 건설부 고시 제 174호(76.11.2)의 권한 위임 ~~사항에 따라~~ 변경 ~~지적승인~~ 하였기 이를 고시 함이다 한다.

2. 관계 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정비국 도시계획과와 관할구청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

1977. 2

서울특별시장

가 재개발지구 ^{변경 결정} 지적승인 조서

구분	지구명	위치	면적(㎡)			비고
			기정	변경	변경후	
청계천	제4지구	중구 신양동 27-34	850	감 109	741	
가	제5지구	" 27-73	709	감 109	818	
	제9지구	" 27-5	590	감 206 증 150	534 444	

제 3 안

수신: 건설부장관



제목: 동건

시정

1. 당시 도시계획 재개발구역 (청계천가 지구)을 별첨 고시문 사본 및 도면 표시와 같이 변경 결정 및 지적승인 하시기 보고합니다

첨부: 고시문 사본 및 도면 1부

제 4안

수신: 중구청장

제목: 동건

1. 당시 도시계획 재개발구역 (청계천가 지구)을 별첨 고시문 사본 및 도면 표시와 같이 변경 결정 및 지적승인 하시기 홍보하니 관계 도면을 정리한 후 대적 증명 발급 및 관련 업무에 착오 없기 바랍

첨부: 고시문 사본 및 도면 1부

제 5안

수신: 도시정비과장

발신: 과장

제목: 동건

1. 도정 432-50호 (19. 2. 2) 와 관련입니다

2. 위대로로 요청한 도시계획 재개발지구 (청계천가 지구)가 별첨 고시문 사본 및 도면 표시와 같이 변경 결정 및 지적승인 하시기 홍보하러 업무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

첨부 고시문 사본 및 도면 1부

제 6안

수신: 총무처장관 (시: 문화정보실장)

발신: 시정(과장)

제목: 관(시)보 게재 의뢰

1. 다음과 같이 관(시)보 게재를 의뢰하오니
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

1) 게재구분: 고시

2) 게재건명: 도시계획 재개발구역 변경결정자백승인

3) 법적근거: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제13조

첨부: 포시문사본 및 2(1)부 글